나. 조례규칙심의회

○ 조례규칙심의회 설치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공포 등을 하려는 경우에 이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조례규칙심의회를 설치**한다.

- 조례규칙심의회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고, 부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실장·국장 또는 실장·과장이 됨.

< 「지방자치법 시행령」 >

제28조(조례·규칙심의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ㆍ규칙의 제출ㆍ제정ㆍ개정ㆍ폐지 및 공포 등을 하려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이 장에서 "조례ㆍ규칙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조례안
2.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 공포안.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 공포안은 제외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ㆍ개정ㆍ폐지하려는 규칙안
4. 예산안ㆍ결산 등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②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고, 부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부지사ㆍ부시장(부지사 또는 부시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부지사 또는 부시장으로 한다)ㆍ부군수ㆍ부구청장으로 하며, 위원은 실장ㆍ국장 또는 실장ㆍ과장으로 한다.

③ 조례ㆍ규칙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 우리시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따라 **시장을 의장으로 하고 행정(1)부시장, 행정(2)부시장, 정무부시장을 부의장으로 하며 각 실·본부·국장을 위원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다.
  (2022. 5. **현재 총** 39**명**)

⮜ 조례규칙심의회 안건별 심의 순서 ⮞

개회	➡	조례공포안 및 재의요구안	➡	조 례 안 (차기 시의회 제출안)	➡	규 칙 안 (공포 · 시행)	➡	폐회

- **심의회는** 매월 또는 분기별 등 **주기적으로 개최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는데, 그 이유는 심의회 심의안건은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부로 이송된 조례공포안, 차기 시의회에 제출할 조례안 등을 심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의회 개최 일정을 시의회 정례회 또는 임시회 등과 연동하여 정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 「지방자치법」 제32조에 따라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집행부로 이송된 조례공포안은 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포해야 하는바, **시의회 정례회 또는 임시회 폐회일로부터 20일 이내에는 심의회를 개최**하게 된다: **통상적으로는 시의회 폐회일로부터 1~2주 이내 개최**

< 2022**년도 조례규칙심의회 개최**(**예**) >

☞ **제305회 시의회(임시회)** : 2022. 2. 7.(월) ~ 2. 21.(월)
⇒ 조례규칙심의회 : 2022. 3. 3.(목) 개최

☞ **제306회 시의회(임시회)** : 2022. 3. 25.(금) ~ 4. 8.(금)
⇒ 조례규칙심의회 : 2022. 4. 21.(목) 개최

- 상정된 안건(조례안, 규칙안 등)은 **소관 실·본부·국장이 안건별 제안설명** 하며, **안건이 여러 건인 경우에는 일괄 제안설명**할 수 있다.